

박형준 / 2월+3월+5월 / 도약 GS / 3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29059	20.5	13.6	17	11	62.1	1	2.17%	7	46
534346	19.4	13	16.5	11	59.9	2	4.35%	5	
534196	20.4	13.4	15.5	10.5	59.8	3	6.52%	7	
534231	19.9	13.5	16	10	59.4	4	8.70%	7	
534241	20.4	13	16.5	9	58.9	5	10.87%	7	
534165	19.8	13.3	15	10.5	58.6	6	13.04%	5	
534175	19.9	12.8	13.5	11.5	57.7	7	15.22%	5	
536423	20.1	13.5	15	9	57.6	8	17.39%	6	
534345	18	13.4	17	9	57.4	9	19.57%	6	
534161	20.3	13	16	8	57.3	10	21.74%	5	
534451	20.8	12.5	14.5	9.5	57.3	10	21.74%	6	
534347	19	13	16.5	8.5	57	12	26.09%	4	
529237	20.1	13	15	8.5	56.6	13	28.26%	6	
529129	20.1	13.7	13	9	55.8	14	30.43%	6	
534358	19.5	13	14.5	8.5	55.5	15	32.61%	6	
534160	19	13	14	9	55	16	34.78%	6	
534425	18.5	13.5	15	8	55	16	34.78%	5	
534391	17.9	13	15	9	54.9	18	39.13%	6	
529165	18.2	14	13	9.5	54.7	19	41.30%	6	
534162	19.5	11.5	14	9.5	54.5	20	43.48%	6	
535454	19	13	14	8.5	54.5	20	43.48%	5	
536429	18	13	15	8.5	54.5	20	43.48%	4	
529402	20.3	13	15.5	5.5	54.3	23	50.00%	6	
534381	20	13	13	8	54	24	52.17%	6	
528964	19.8	10.9	14	9	53.7	25	54.35%	6	
534194	19.8	12	12.5	9	53.3	26	56.52%	5	
534166	19.7	11.8	13.5	8	53	27	58.70%	4	
534251	19	12.5	12.5	9	53	27	58.70%	7	
534202	19.7	13.9	13	6	52.6	29	63.04%	6	
529277	18	12.9	12.5	8	51.4	30	65.22%	5	
542857	17	11.5	12.5	10	51	31	67.39%	5	
534163	18.9	12.9	12.5	6.5	50.8	32	69.57%	6	
534250	18.5	11.1	13.5	7.5	50.6	33	71.74%	5	
534426	19.5	12.5	11	7	50	34	73.91%	4	
534455	17	11	13.5	8.5	50	34	73.91%	6	
534187	19.9	13	11.5	4.5	48.9	36	78.26%	5	
534205	16.5	12	10	9	47.5	37	80.43%	5	
534355	17.5	11.8	11.5	6.5	47.3	38	82.61%	5	
534343	13	13	12.5	8.5	47	39	84.78%	4	
534188	16.7	11	10.5	8	46.2	40	86.96%	5	
534348	13.5	15.5	11	6	46	41	89.13%	5	
534514	19.4	12.5	8	0	39.9	42	91.30%	5	
534247	18.5	10.5	8	2.5	39.5	43	93.48%	5	
535551	19	11.5	0	9	39.5	43	93.48%	6	
534396	18	11.5	6	0	35.5	45	97.83%	4	
528987	15	8	7	4.7	34.7	46	100.00%	4	

<p>박형준/2월/도약GS/3회/1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논점 담은 문제입니다. 다들 잘 쓰셔서 누락이 없다면 조문병기여부와 목차 깔끔한지 여부가 변별기준이 되었습니다. 10점당 7점을 만점으로 채점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발생요건과 행사요건에 대해서 조문 누락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다들 잘 쓰셔서 조문까지 쓰신 분들이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4.2점 최고점에 대체적으로 잘 쓰셨다면 4점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문제1번중에서는 논점이탈이 가장 많았던 문제입니다. 경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논점 누락 주의해야 합니다. 조치를 대목차로 써내려가는 것보다는, 조치를 대목차로 잡고, 중목차로 조치를 나열하는 답안지가 가독성 더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대부분 잘 쓰셨습니다. 발생, 행사를 위한 조치와 보상금 청구권 행사, 특허권 행사까지 누락하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잘 쓰시지만, 적절한 목차로 묶어서 써주는 것이 점수 부여의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문 병기해주는 경우에 인상 더 좋았습니다.</p> <p>3. 소결</p> <p>다들 잘 쓰셨습니다. 보상금청구권 문제는 출제되면 항상 이 답안지 형식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2월/도약GS/3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특허권 공유에 대한 기본문제입니다. 기본서 회독이 잘 되어있다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공유의 법적성질과 분할청구 가부 및 현물분할 가부는 대부분 누락없이 쓰셨습니다. 다들 너무 잘 쓰셔서, 민법 조문 병기 여부와 , 99조 2항 4항의 취지 기재 여부 및 판례 키워드 누락 여부로 점수 변별했습니다.</p> <p>다들 잘 외우는 판례에 대해서는 키워드 누락 및 판례 두께 신경써서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대금분할에 따른 법정실시권에 대한 문제로, 결론 틀리신 분들 많았습니다. 결론 맞은 경우 2점, 사안포섭 두껍게 하신 경우 2.1점, 답 틀리신 경우에 1점 부여했습니다.</p> <p>제조 판매 준비중에 불과했으므로, 법정실시권 발생하지 않으며, 제조 판매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가야합니다.</p> <p>이때에도, “있” 다 와 구분될 수 있게 “없” 다를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p> <p>(3) 설문 3</p> <p>단독 침해금지 가부 및 손해배상가부에 관한 문제로, 대부분 결론까지 잘 써주셨습니다. 판례를 다들 잘 적어주셔서 민법 규정 및 특허법 규정 언급하신 분들의 답안지 인상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결론 모아찍기 해주신 것도 답안지 인상 좋았습니다.</p>	

3. 소결

논점이 주어진 문제여서 논점 이탈은 많이 없었으나, 조문 병기와 설문2번 답 틀렸는지 여부에서 점수가 변별된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도 10점 단위로 최고점 7점으로 보고 채점했습니다. (1점당 0.7점 만점)

<p>박형준/2월/도약GS/3회/3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균등침해의 제1요건 및 제2요건 관련 문제였습니다.</p> <p>각 설문의 난이도는 까다롭지 않으나 설문이 6개로 구성되어 시간 관리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균등론에 관해 물어보는 기본적인 단문문제였습니다.</p> <p>판례가 판시한 취지를 따로 작성한 분들께는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효과의 경우 민사상 효과와 형사적 효과 모두를 작성한 분께 높은 점수를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제1요건과 제2요건 판단방법을 목차를 나누어 작성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공통된 내용이 있으므로 목차를 합쳐 작성하는 경우가 가독성이 더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메이저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과거 판례, 최근 판례, 검토를 모두 작성한 분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또한, 균등침해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사안 포섭을 한 분께도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4) 설문 4</p> <p>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방법과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에 대하여 나눠서 판례를 작성하고 사안포섭을 해주신 분께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5) 설문 5-1

판례의 문구가 설문에 제시되어 있는 만큼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6) 설문 5-2

정답을 틀린 분이 몇몇 계셨습니다.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된 경우에는 마이너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균등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3. 소결

설문(2)에서 제1요건 및 제2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어보았는데, 이후의 설문에 적용되는 판례를 설문(2)에 적어주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설문(2)에 판례를 적고 이후의 설문에 똑같은 판례를 적더라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문을 모두 푼 이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2월/도약GS/3회/4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각 설문이 여러 논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까다롭지 않았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모든 설문이 A급 논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헛갈린 판례가 있었다면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청구범위의 해석 방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p> <p>조문을 선결 기재한 후에 판례를 작성한 경우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p> <p>또한, 가독성을 위하여 각 판례마다 제목을 다는 걸 추천 드립니다.</p> <p>(2) 설문 2</p> <p>녹다운 수출 법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p> <p>대부분 판례의 결론에 따라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p> <p>녹다운 수출 법리의 요건을 줄글로 검토한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보다는 목차를 나누어 검토한 답안의 가독성이 더 좋았습니다.</p> <p>간접침해를 검토한 분들께도 추가적으로 점수를 드렸습니다.</p>	

(3) 설문 3

이용침해 법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안을 적용함에 있어 구성 P의 부가로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이용침해가 성립한다는 답안이 많았습니다.

다만, 기존 구성의 기능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 답안에 더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소결

4번 문제였으므로 결론을 마무리 짓지 못한 답안이 몇몇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한 경우에는 조문이나 판례를 생략하더라도 사안에 적용하여 결론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판례를 작성할 때 키워드에 따옴표 표시를 한 경우 가독성이 더욱 좋아 보였습니다.

<문-17>

I. 실문 (1)

3.1
16.8

1. 보상금 청구권 의 취지 - 법 65조

출원발명의 발현을 위해, 출원인은 출원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 대해 영장요건 하 보상금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2. 발생. 행사 요건

①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출원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것은 안다.

② 출원발명이 실용화된 이후에만 행사가능하다.

권리행사

3. ~~발~~ 금액

고의실시안으로부터 실용화된까지의 기간동안 그 실시에 대해 합리적인 받은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가능하다.

4. 특허권과 관계

특허권 행사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5. 준용규정

강령침해 (법 129조), 시행방법 규정 (129조), 지출비용



명령(1322), 공동발명해위, 대기신명시효 규정 존용된다.

6. 신명

특히 개명특정 학명. 출원 포기. 무효 처하. 무효 심판 학명 등으로 신명할 수 있다.

II. 심문 (2)

1. 평균 타당성 검토 - 신규

(1) 출원발명 청구 대상 여부

은 甲의 출원발명인 물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경우 대상 만족한다.

(2) 출원발명 하자 검토

은 甲의 출원일 지인 2024. 10. 3부터 물질 A를 생산. 판매 한 바, 甲의 출원발명은 신규성 위반 하자가 존재한다.

(3) 심사용권 인정 예비성 자위

1) 의의

출원발명의 발명은 등록발명의 발명보다 큰 수 있는 바 특허심판등권 시 심사용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록권 인정될 수 있는 예비성 자위를 말한다.

2) 사안

2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물건 A를 출원 제
외 생산·판매한 바 심사용과 인장 예비식 지위
인정된다.

(4) 신권

甲 특허를 하자. 2의 심사용과 인장된 예비식 지
위 등 고려할 때, 甲의 ~~권~~ 및 침해금지 청구는
부당하다.

2. 2 권리 검토

(1) 계속 실시

甲의 권리가 부당하므로 2은 자신의 발명 A를
계속 실시할 수 있다.

(2) ~~정비제공 - 법 59조의2~~

甲의 출원에는 신규성 위반의 객체유가 존재하
므로 이를 가한 정비제공할 수 있다.

(3) 심사청구 - 법 59조

아직 심사청구하지 않은 경우 甲 출원 등록 방
지를 위해 심사청구 할 수 있다.

(4) 무심심사청구 - 법 61조

출원공개 이후 제3자 무한 실시, 출원인의 실시.
실시 준비 등 인정되는 경우. 2은 무심심사청구할
수 있다.



(5) 출원 취하·폐기 권유

甲의 출원에는 하자가 있음은 기한이 지났으므로 甲에게 자신의 출원을 취하 또는 폐기한 것을 권유해 볼 수 있다.

(6) 답변서 송부

2이게는 심사청구 안성된 예비적 지위가 완성되고 甲 출원에는 심사청구 위반 하자가 있으므로 甲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 답변서를 송부할 수 있다.

(7) 부당 청구 대응

甲의 부당한 청구로 2이 손해 입은 경우 손해배상신청 등 고려해볼 수 있다.

III. 심문 (3)

8.4

1. 발생금 청구권 대상 검토

丙은 甲 출원 발명의 실용이 기재된 제법 B를 사용해 A를 생산하고 있고, 물건 A에는 앞서 선택된 바 신규성 위반 하자가 있으므로 제법 B의 권리화 필요하다.

2. 발생금 청구권 발생 위한 조치

(1) ~~권리화~~ B의 권리화



甲은 발명권 청구권 행사를 위해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제법 B를 청구범위이든 기재하는 발명은 통해 B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출원인에게 유익은 통한 출원 개시점상 행위를 위해 신기술 위험 하자 있는 불리 A는 청구범위에서 제외하는 발명도 필요하다.

(2) 출원공개

아직 출원공개되지 않은 경우 출원공개가 필요하다.

(3) 공개개선청구

甲은 자신의 출원에 대해 공개개선청구하여 발명공시 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시면경고

출원공개 후 甲은 丙에게 시면경고할 수 있다.

3. 발명권청구권 행사 방법

(1) 심사청구 - 조 59조

빠른 등록을 위해 甲은 자신의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

(2) 우선심사청구 - 조 61조

제조사 위한 실시 (출원공개 이후), 출원인 실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甲은 우선심사청구할 수 있다.

4. ~~보상금 청구권 행사~~

(1) 공역

고의실시일로부터 ~~생략~~ 등록일까지 기간동안 실시에 대해 합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역 상당 청구할 수 있다.

(2) ~~다~~ ~~연~~ ~~시~~ ~~효~~

생략등록일로부터 3년, 실시일로부터 10년 중 빠른 날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5. 특허권 행사

(1) 특허권 행사 - ~~보상금 청구~~

특허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엇~~ ~~은~~ ~~생략~~ 등록 이후 실시에 대해 특허권 행사 가능하다.

(2) 민.행사 권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 고소 등 할 수 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무엇~~ ~~은~~ ~~가~~ 실시 대상으로 ~~특정~~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할 수 있다.

(4) 가타

침해금지 가처분, 가압류, 증거보전신청 등 고려해볼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15/16

(문-2)

I. 선행 (1)

1. 공유분할채권 규정 관련

法에는 공유분할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2. 공유특허권 관련 규정

(1) 의미 - 法 99조 2항, 4항

특허권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 동의권 받아야 지분 양도, 질권 설정, 실사권 설정 가능하다.

(2) 취지

특허권의 경우 경제성, 능력이 따른 실시 능력으로 인해 지분 경제성 가치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특허권 특성 고려한 규정이다.

3. 특허권 공유 생긴 취지

여러명이 하나의 특허권 공유하는 경우 지분 양도, 질권 설정, 실시권 설정 등 각종 제약을 가하는 法 99조 2항, 4항은 ~~특허권~~ 합유채권 상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무체재산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특허권 공유 시에는 2인 합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있고, 특허법이 합유권보다라는 영문의 규정도 없다. ~~특허법~~ 불질에 반

하지만 특허법 명문 규정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이 과한 민법규정 적용될 수 있다.

4. 현물분할채권 민법 규정 적용 가법 취사설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특징은 과한 공익 조항이 없다고 볼 수 있고, 특허법이 불합은 금지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바 민법에서 공익을 분할채권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현물분할 가법 취사설

특허권 현물분할을 허용한 경우 사실상 내용이 같은 여러개의 특허권이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분할 허용되지 않고, 가정배상은 통한 현물분할을 허용된다.

6. 사안

법원은 현물분할을 명할 수는 있으나 가정배상은 통한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같은 여러개의 특허권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2의 공익을 분할채권 제법하고 법원은 가정배상을 통한 현물분할을 가능하다.

II. 식은 (2)

1. 공유특허권 분할에 따른 특허실시권 없다

타 공유특허권자 등 분할을 위해 신청 하 발명하는
 방식 실시권이다.

2. 요건

공유 특허권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 실시할 것은
없다.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3. 사안

~~특허~~ Z의 공유를 분할청구 이전에 甲은 휴대폰
 K를 제조·판매 준비한 것은 없다므로 실시권이
 아닐 바 법정실시권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휴대폰 K 제조·판매 시 청해 성립하므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III. 식은 (2)

1. 당국 침해금지청구

(1) 원상 복구 대상

공유를 분할행위는 일인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2) 과외 배제

공유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권의

4.5

발명행위이 해당하든 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침해금지청구할 수 있다.

(3) 검토

침해금지청구는 공유자 모두에게서도 위한 발명행위이므로 본 수 있으므로 취하게 타당하다.

(4) 사안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침해금지청구할 수 있다.

2. 특허 손해배상청구

(1) 민법 관련 취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 지분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법 관련 취지

공유특허권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큼에 대해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3) 사안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권에 대해 자신의 지분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13.6

〈문-3〉

I. 실용 (1) 3.5

1. 균등 의의

아무런 자의 창작 가하지 않은 자의 회피수단을 인
한 특허권 실질적 불능 불가 방지를 위해 특
허발명가 균등한 발명을 보호범위에 속한 것으로
보는 수단이므로 확립될 법리다.

2. 수제 판시 취지

특허출원시 청구범위에는 발명받은 사항을 기재하든
특 지이 있는데 이는 문언 상 해석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사소한 발명 구성요소의 변경은 통해
침해는 변하는 것^{안함}을 특허권 실질적 불능을 위한
것이다.

3. 요건

① 과세해결유기 동일성, ② 작용효과 실질적 동일성,
③ 구성요건 동일성, ④ 자유기술항해당하지 않은
것, ⑤ 의식적 제의 사정 없는 것 요한다, ①-③
은 특허권자, ④, ⑤는 침해자 입증책임 있다.

4. 효과



권등 인정시 특허권 침해 인정되므로 침해금지
청구. 침해대상 청구등 민사상 조치 가능하다.
특례에 따르면 침해의 생략도 가능하다.

II. 문 (2) 4.5

1. 권등판결 대상

(1) 항소

① 구심요건을 대비하는 구심요건대비. ② 반면을
대비하는 반면대비가 있다.

(2) 특례

여러 판시들과, "특허반면에 대응되는 구심요건
권등하지 비교해 볼 때" 를 고려하면 구심요
건 대비 입장이자.

(3) 결론

생략침해 등을 범하는 징, 권등을 취지 등 고려한
때 특례 타당하다.

2. 1, 2요건 판단방법

(1) 항소

구심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심요건대비, 반면
요건에 대한 중심 판단하는 반면대비/대략대비가
있다.

(2) 쇄체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발명자에게 맥락을 고려하고, 기술사상 핵심이 놓이진 경우에는 2차 판단은 구성요소 개별적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영향

근등을 도입 취지, 특허발명의 실질은 기술적 과제 해결에 있는 점 고려하여 쇄체 라당한다.

3. 결론

쇄체는 구성요소 중심으로 근등판단하여, 발명자에게 맥락도 고려하고 기술사상 핵심 놓이 시에는 2차 판단시 개별 구성요소 영향 고려한다. (Tool)

IV. 실문 (3) 2.0

1. 과제해결을기 동인성 관련 쇄체

(1) 과제 쇄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발명된 구성은 비발견적 구성에 해당하므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대상발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 과제 쇄체

기술사상이 핵심은 파악하여 그 기술사상의 핵심



이 위치다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3) 검토

특허발명 불충분 기술적 사상의 핵심이 있는 바 청구
항목에 해당한다.

2. 사안

핵심 구성 B이도 균등한 구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형한 사안만으로 침해 불성립 주장하는 2주
항 부당하다.

IV. 결론 (4) 2.0

1. 각지해판유치 동일성 관련 취지

각지 취지에 따르면 구성 차이를 무시하고 기술
적 사상의 핵심이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했다.

2. 작용효과 실질적 동일성 관련 취지

유치권으로 특허발명의 특정한 ~~기술적 효과~~
해결방법이 동일하면 동일한 것으로 본다. 기술적
사상의 핵심과 관련한 구성 효과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면 양 발명
작용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사안

C와 C' 구성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단기 X와 X'의 과제해결 능력이 상이하거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차이만으로도 균등침해 부정하는 2 주장은 **부당**하다.

V. 결론 (5) - 1) **3.0**1. 기술사상 핵심 공지 시 **취소**(1) **과거** **취소**

공지되지 않은 기술사상으로 판단할 바 있다.

(2) **최신** **취소**

발명의 실명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사상은 권리권 공지되지 않은 기술사상으로 기술사상의 핵심은 대체하여 판단해서는 안된다.

(3) **평판**

발명의 설명 기능. 균형을 취지 고려할 때, 최신 **취소** 타당하다.

2. 사안

임의단기 X 핵심이 공지되었더라도 X의 핵심은

B가 아닌 C이 관해 기술사상은 대체하여 판단
해서는 안된다.

VI. 식은 (5)-2) 2.0

1. 작용과 동일한 실시예

무엇이든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 ~~이~~ 이 기
관하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유지되는 경우 작용
과 식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사상의
핵심이 유지되었거나 공지될 것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요소의 영향 등을
비교하여 작용과 식이 식이 동일성 인정되는지 여
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사안

강제적으로 X의 핵심이 유지되었으므로 개별 구성요소
C'의 영향은 비교해 볼 때 C와 C'은 각각
B와 B'은 분해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
작용과 식이 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판정해 생략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구성은
타당하다.

(7/1)

<문-4>

I. 문 (1) **2.0**

1. 특허권 행사 청구범위의 해석

(1) ~~특~~ 법402 제항 본문

청구범위(이는 발명발견이라는 사항은 기재해야 한다.

(2) 관련 사례

1) 청구범위의 기준

청구범위(이는 발명발견이라는 사항은 기재해야 하는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때 발명의 명칭 등 기재된 용어 제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발명의 명칭 참작

발명의 명칭은 출원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명
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
해야 하는 바 발명의 명칭은 참작하여 청구
범위를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발명
의 명칭 기재된 용어 제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안

청구범위에 A+B를 기재하고 발명의 명칭이 A+B
+C를 기재하여 출원발명 발명의 명칭은 참작하

여 청구범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甲의 특허발명은 $A+B$ 이고, 이는 $A+B+C$ 로 지칭 해석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판단을 **부당하다**.

II. 식문 (2) 4.5

1. 국내에 이미 유통상 침해 여부-2주

특허발명은 $A+B+C+D$ 이므로 Z은 그 개별 제품인 A, B, C, D를 생산하는 바 결합이 결여되어 국내에 유통상 침해 아니다.

2. 국내 특허발명 실시 간주 취지

(1) 목적의 유통

각 나라의 특허권은 목적의 유통에 따라 등록받은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2) 국내 생산 가능할 수 있는 경우

① 국내에서 각 구성 성분 또는 반제품이 생산되고, ② 그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가공 작업이 완성되어 있고, ③ 그러한 가공·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완성된 제품이 해당하여 국내에서 각 구성요소의 생산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결합될 전체로서 작용하는 상태로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발명의 국내 생산으로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효성 보전에 부합한다.

3. 사안

(1) ①요건

Z은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각 개별 제품 A.B.C.D를 생산한 바 ①요건 충족한다.

(2) ②요건

실제 일별에 있는 2의 12에게 숙출하여 A.B.C.D의 조합 내지 결합이 예외적이 있으므로 ②요건 충족한다.

(3) ③요건

필연성 불명확하나, A.B.C.D를 조합 내지 결합하는 것이 극히 사소한거나 간단한 과정이라면 ③요건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4) 4요건

③요건 충족 여부가 필연성 불명확하나, ①, ②요건 모두 만족하고 A.B.C.D를 조합 내지 결합하는 공정이 극히 사소한거나 간단한 경우라면 Z의 국내 A.B.C.D 생산행위를 국내 특허발명 A+B+C+D의 생산으로 보아 침해 주장할 수 있다. (Good)

III. 설문 (3) 4.5

1. 이용침해 범의 확대

실시발명이 비등류발명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용과 관련된 기술 상해특허발명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

가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여 일체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특허발명과 균등한 발명은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수 있다.

2. 일체성 관련 췌시제

특정 실시발명에서 특정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 이용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시발명에서 특허발명은 결재하지 않는 새로운 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 이용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사안

(1) 일체성 유지되는 경우

Y가 발명 X의 기술사상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여 그 일체성이 유지되는 경우에서 특별한 효과가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용침해에 해당하므로 **부정**하게 침해다.

(2) 일체성 상실되는 경우

발명 Y가 X에 구성 P 목자를 인해 불래 X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특별한 효과 **부정**하게 가져오는 경우는 이용침해 성립하지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뒷장피독]



알므로 申 특허권 침해 아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 -1]

I. 실문 (1)



1. 보상 청구권 의미 (법6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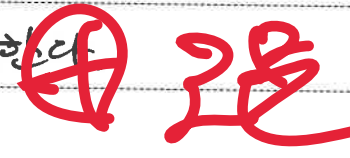
출원발명 보호를 위해, 출원발명의 무단실시자에게 보상
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발생요건

출원공개 후, 실시자가 출원발명을 고의로 영으로써 실
시해야 한다.

3. 행사요건

출원발명이 실정등록된 것을 말한다.



4. 청구가능능액

(1) 무단실시 일로부터 실정등록시까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량법은 동등적인 음액이어서 합리적인 음액의 청구가능능액
을 변경하였다

5. 특허권과 독립

보상금 청구권 행사는 특허권 행사와 독립적 인바, 공권적
으로 행사 가능하다

6. 준용규정

간접침해, 생산방법추적, 자료제공명령, 공동 불법 행위,
소멸 시효 규정이 준용된다.

7. 소멸



출원이 무효. 취소. 포기. 거절결정 확정되거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보상금 청구권을 소멸한다.

II. 실문(2)

8

1. 정권이 타당성 검토... 무당

(1) 보상금 청구권 대상 검토

甲 출원 발명가 동일한 물건 A를 최초 단계에서 바, 원상금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2) 출원 발명 하위 검토

1) 신규성 의미. 하위 (상항 29조 1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 인바, 출원 발명으로 공시발명가 등원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사안

甲 출원 이전 근이 먼저 A의 최초 단계로 실시한 바, 甲의 출원에는 '신규성 하위'가 존재한다. 이하 근의 조리에 대해 검토한다.

~~2. 근의 조리~~

(3) 선사양권 인정될 예비적 지위

근은 甲 출원 이전부터 A에 대해 선으로 지위·판에 한 바, 선사양권이 인정될 예비적 지위에 있다. 출원 발명 보호가 특허권보다 큰 수 있음에 비하여 근이 실시는 제한될 수 있다.

2. 근의 조치

(1) 제1종 권리

근은 심사용권이 인정될 때(비록 지위에 있으며, 그 출원 변경 하자가 인정, 제1종 권리가 가능하다.

(2) 정보 제공

무 출원 변경에 신청된 위반의 하자가 있음을 들어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3) 심사 청구 (법 59조)

1) 무 출원 제1종 권리를 위해 심사 청구로 하여 권리관계에 걱정
 들 수 있으며,

2) 우선 심사 신청을 통해 조속한 절차 진행을 고려 가능하다

(4) 출원 취하 포기, 양도 권유

출원 변경의 하자가 있음을 들어 출원 취하 포기, 양도
 를 권유해 볼 수도 있다

(5) 답변서 종부

제1종 권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답변서 종부가 가능하다.

특히 법 126조 '침해 금지 청구'는 특허 등록이 된 이후에
 만 제기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6) 손해 배상 청구

침해금지 청구로 인해 양수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
 된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II. 실용(3)

8.4

1. 보상금 청구권 대상 경우

출원 제국 중 무단실시자가 출원 반 명을 고의로 영외에서 실시한 것은 무효이며, 발원 A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제법 B의 현리타가 되어야 청구대상이 된다.

2. 발생을 위한 조치

(1) 제법 B의 현리타

발명의 설명에 제법 B가 있는 바, 원점 시기에 맞춰 B를 청구항위로 변경해야 한다.

(2) 출원 공개 확인

출원 공개는 영외 요건인데, 2024년 11월 16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출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3) 조기 공개 신청

이전 1호 무단실시를 근거로 조기 공개 신청이 가능하다.

(4) 서면 경고

출원 공개 이후 서면 경고가 가능하다.

3. 행사로 위한 조치

특허권 등록은 보상금 청구권 행사요건 인 바,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조속한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4. 보상금 청구 가능 경우 관련

(1) 무단실시일로부터 신청등록까지 기간은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나, 실정등록 이후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에
관해 만나해선 안된다.

5. 등록 이후 조치

(1) 민사상 조치

1) 조 126조 ✓

현재의 침해로 막기 위해,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 및 제거
를 청구할 수 있다.

2) 조 128조 ▼

과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3) 기타

신용 회복 청구 및 수당이등 반환 등 가능하다.

(2) 형사상 조치

1) 조 225조

침해 방지를 위해,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사안

무의 경고 및 등록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침해처리
소송 가능할 것이다.

(3) 기타 조치

침해금지 가처분, 압류 또는 가압류, 증거보전 및
적부액 청구등의 확인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Handwritten red marks: a large exclamation point '!!!' and a signature 'Jax'.

[문제 - 2]

5.9
6.5

I. 소문 (1)

1. 권원 규정 - 조 99가 2항 4항

(1) 의미

공유자 보호를 위해, 지분 이권, 원천 설정, 실사권 설정
에 있어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취지 (취지)

제3자의 지분과 유, 기(물권) 등으로 인해, 다른 공유자
의 지분 존재를 가리키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 들어
동의를 요하는 것이다

2. 특허법 공유 법칙 성질

(1) 취지

특허법 99조 2. 4항에서 합유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은 무체 재산권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고, 일반적
으로 공유자 등이 특허권을 조합체 형태로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특허법 규정에서 특허권 공유를 함부로
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특허법 다른 규정이
나 본권에 반한다는 사정이 없으면 민법의 공유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하여 공유권의 입장이다.

(2) 검토

특허법은 민법의 특별법인 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 조합의 민법 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3. 민법상 승유를 분할 청구 가능 여부

승유를 분할 청구는 공유자간 이해 관계가 대립시 이른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승유를 분할 청구를 인
 정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
 동이 없거나 부호 2항 2항에 반하지 않고, 특히
특허법 규정이 분할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분할
인정할 수 있다.

4. 현물 분할 가능 여부

특허권은 형체가 없으며,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 분할은 하나의 특허권이 복수의 권리로 증가하는
부당해 권리가 생기는 바 부정한다.

5. 결론

①은 개인 발명가라서 신시능력이 있는 바, 승유물을
 분할 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특허권을
 분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지분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가능하다. 다만 특허권을 나누는 방식의 현물 분할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II. 실문 (2)

1. 대응 분할 (제12조)

공유자 실시 금지를 막기 위해, 특허권이 영태
 2 영태 ~~대응 분할될 시~~, 영태간 영태, 승유를 분할

청구시 '신시권'이던 공유자는 원상의 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은 공유자이지만, 제2, 단에 '권비중'이므로 실시 권비에 불과하여 법정 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 따라서 제2, 단에 **제한된다.**

Ⅳ. 실문(3)

49

1. 단독 침해하기 청구 가능

(1) **법 126조**

특허권자는 현재의 침해로 막기 위해 침해하기 청구를 할 수 있다.

(2) **보존 행위 (법 125조 단서)**

공유자 중 1인, 보존 행위로써 방해 배제 청구 가능하다.

(3) '부사'에

공유자 중 1인은 보존 행위로써, 침해자에게 침해 금지 및 배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바 있다.

(4) 검토

공유자 전원이 소제기 해야 한다면, 다른 공유자가 이로써 어느 정도까지 양을 수 있는 바, 허용할 필요 (단서)가 있다.

(5) 사안



단독으로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2. 단독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법 128 ①

라바 손해 환전은 위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2) 사 161

1인은 자신 지분한도에서 침해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하다 관 바 있다.

(3) 사안

자신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끝]

[문제-3]

I. 실문 (1) 3.5

1. 균등권 의미

특허발명나 변경된 구성이 균등한 경우, 실시 발명기 등
 이 발명 보호 범위에 포함되고 보는 이리이다.

2. 균등성이 판사한 취지

문헌적으로 동일하지 않는데도 침해로 인정하는 취지는 특허
 제도가 청구범위 작성하는 것은 문헌상 한계가 있고, 사
 소한 변형으로 인한 침해방지 하면 특허권 실질적 보호 못
 함을 취지로 한다.

3. 요건

(1) 착수적 요건

① 라제 해결 원리이 동일성, ② 작용효과 실질적 동일성
 ③ 구성 변경 동역성이 있다.

(2) 도출적 요건

① 의의적 재의 수정 쉬운 것, ② 각주 기술시 아노 것을 말한다.

4. 효과

(1) 권리상 효과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발생한다.

(2) 형사상 효과

침해죄 고소도 인정한다.

Ⅱ 실문(2) 3.5

1. 균등판단의 대상

(1) 종류

- ① 구성요소가 균등한지를 대비하는 '구성요소 대비',
 ② 발명 전체가 균등한지 보는 '발명 전체 대비'가 있다.

(2) 판례

판례의 판형, '각 구성요소가 균등한지 대비할 때'
 이를 고려하면 구성요소 대비의 입장이다.

(3) 검토

발명 전체 대비 시, 생각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나, 구성요소 대비가 타당하다.

2. 1, 2 목전 판단 방법

(1) 종류

- ① 개별 구성요소가 균등한지 보는 '구성요소 중점', ② 발명
 전체 맥락에서 판단하는 '발명 전체 중점'이 있다.

(2) 판례

변경된 구성에도 기술사상 핵심이 유지되었는지
 를 중심으로 관계해결 원리를 타당 한라하여 '발명
 전체 맥락 중점'으로 타당 하다가도, 기술사상 핵심이
 공시된 경우 구성 개별적 기능을 강조한다고 한다.

(3) 검토

특허법의 실용성 요건을 위해 반영 전체 왜각 단안 방식이 타당하여 예외적으로 반영 핵심이 공지된 경우 구성 개변적으로 단안항이 타당할 것이다.

IV. 실용 (3) 2.0

1. 예외적 구성이 변경된 경우

(1) 리커 사례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을 대체한 것이어서 특허발명 실용성이 유지된다 하였는데, 이는 주요 구성을 변경하면 쉽게 침해 회피하는 문제를 낳았다.

(2) 초은 사례

~~과거한 변경이도 불구하고 기존 사항 핵심이 실시발명에서 도 제외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한다.~~

(3) 검토 및 사안

예외적 구성도 포함된 반영이 있으므로, 핵심 구성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성립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IV. 실용 (4) 2.0

1. 바이어 구성이 변경된 경우

(1) 리커 사례

리커 사례
이유사항
은 실용성
과 단안항
관련 한다

과거 LED 사업에서, 변경된 구성을 개시재고로 비교하여
기준 침해를 부정한 바 있다.

(2) 최근 위시서

과거와 달리, 2차판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상 핵심이
신시 발명에서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타각해야 한
다고 한다.

(3) 사안

C와 C'로의 변경에도 기술사상 핵심이 유지된다면
과제 해결 단계가 동일할 것이다.

2. 작용 효과 관련

기술사상 핵심과 관련 없는 부분의 차이도
기준 침해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경우에 따라 기준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성의} 차이
적 차이를 들어 침해 아니라고 주장은 **부당하다**.

V. 설문 (5) - 1) 2.5

1. 기술사상 핵심이 공지된 경우 (4u)

(1) 과거

과거에는 명세서에 없는 다른 공지기술로 기술사상
핵심을 바꿔서 판단한 바 있다.

(2) 최근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실시예는 본어, 명세서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해석을 다른 실시예에 관한 기술사상의 해석으로 대체해서 파악해서 안된다.

(3) 검토

제각자의 예측가능성 및 피해방지를 위해 기술사상 해석을 대체하는 것은 무당한 것이다.

(4) 사안

기술사상 해석은 C에 관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VI. 설문 (51-2) 2.0

1. 기술사상 해석이 금지된 경우 - 효과 (70개)

1) 원칙적으로도 특허 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실시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판단한다.

2) 다만 기술사상의 해석이 관련 당시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음 같은 경우, 작용효과가 동일한지도 실시발명도 특허 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해결하는지 판단해서도 안되고, 균등여부가 무관하고 구성 개별적인 기능을 대비해 판단한다.

2. 사안

김진단기 X의 해석이 금지된 바, 작용효과 동일성 판단 시 변경된 구성 개별적인 기능을 비교 판단한다.

따라서, C와 C'은 B와 B'의 기능을 인코딩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느냐,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앞으로, 2의 주장은 타당하다.

[문제-4]

I. 선출(1) 2.0

1. 특허요건 판단시 청구항의 해석

(1) 제 42조 4항

청구항의 보호 범위를 사정 기재해야 한다.

(2) 청구항의 기술 (후)

청구항의 보호 범위를 사정 기재하는 것인데, 판단대상인 청구항 기재 사항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3) 발명의 설명 방식 (후)

청구항의 문맥 해석을 기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해서 기술적 의미를 고찰 할 때 그 개량, 권리 범위를 대안한다. 청구항 설명 설명 도면의 제한 해석 안된다.

(4) 사안

① 사안에서 신규성,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A+B이고, 발명 설명 및 도면 시 있는 다른 기재로 제한하면 안된다.

② 따라서 무 출원도 A+B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甲 발명은 **부응하다**.

II. 실용 (2) 5.0

1. 구성요소 원배원칙상 침해 여부... 소극

특허권 침해 실시에 해당하려면 전항관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침해한 아, 구성요소는 모두 원배하진 않았다.

2. 독자용 부품 법리 (判例)

(1) 독자용 원리

특허권의 독립적 실시에 대한 한도는 독립된 자가 내에서의 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전

이특허물건 실시를 위한 부품 전체 및 구성요소 모두 같은 업체에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이 부품이 하나의 전체 부품 수조되어 조립 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부품 전체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와 같은 부품 전체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와 같은 부품 전체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와 같은 부품 전체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3) 결론

국내에서 특허물건 생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특허권 침해로 보아야 다량하다.

3. 사안의 경우

i) 특허물건의 구성 A, B, C, D 전체를 국내에서 생산하였고,

ii) 이것이 일본의 업체에 수출되어 조립 내지 조립되

침해/ 시그라 같은 기능 인상이 극히 사소한거나
간단해 부동 생산으로 유익한 결합한 작용효과를
추천해 낼수 있다면, 속자권의 예외를 인정해
국내에서 특허 출원 생산된 것으로 보아 침해 인정
가능하다.

다만, (3). (4) 요건이 충족되어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
더라도 간접침해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권리행사 완성된
사 간접침해 책임을 물을수 없다.

II. 실용 (3) **3.5**

1. 기능 침해 법리 (후자제)

실시반영이 미흡한 이더라도, 실시반영이 특허발명 기술적
구상에 새로운 기준을 요소로 추가하여, 실시반영이 특허발
명의 본질을 권속 도출하는 이를 그대로 이용하지, 실시반
영내 특허발명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있다면, 침해에
해당한다.

2. 일체성 관련 (후자제)

실시반영이 특허발명 작용효과를 그대로 구현 한다면
일체성으로 유지하는 있다면 받아 한다.

3. 사안

(1) X 호나 유이티브 경우

의 부호 새로운 호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기존 X의

특허가 유지된다면 침해에 해당한다

(2) 특허가 ~~변~~ 바뀐 경우

P부가의 침해 작용효과가 바뀌어 실시예가 아니더라도 원특허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침해가 인정될 것이다.

(3) 사안

원특허로 부증된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Y가 X보다 진보하다 하더라도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